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 동 길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동길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5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의 관내 도로(시도이면서 보도를 포함)에서
지반침하 또는 공동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도로 지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시장으로 하여금 도로의 지하 또는 연접 위치에서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실시 대상의 지하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도로에 대해 효과적인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이상 징후 발견시 신속히 조치토록 함으로써 지반침하 또는 공동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방코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원안을 참조해주시고,

모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